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

양미경*

Ⅰ. 머리말
Ⅱ. 다문화 관련 정책
1. 다문화 관련법과 제도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Ⅲ.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정책 및 교육 현황
1. 다문화 전문 인력 정책
2.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 현황
Ⅳ. 문제점 및 발전 방안 제언
1. 다문화사회전문가 개념 및 역할 측면
2. 제도 운영 측면
3. 전문가 활용 측면
Ⅴ. 결론 및 제언

국문요약

세계화, 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거부할 수 없는 세계 환경 변화 속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동은 한국도 비켜갈 수 없다. 체류 외국인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1]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가, 정부의 유학생, 전문

*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1)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인력 등 우수인력 전략적 유치 및 재외동포 포용정책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2] 이에 예상되는 갈등과 부작용을 대비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다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정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관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문화사회전문가 개념 및 역할 측면에서는 개념과 역할의 명확화를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3]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규정을 분리, 다문화사회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역할과 자격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학위과정의 내용 개정 및 표준 교재 개발, 1급 자격을 위한 이수교육 개설과 보수교육 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활용 측면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범위를 교육, 법, 예술, 공무, 사회사업,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특히 주관 부서인 법무부를 위시하여 공공기관에서 전문 영역별 다문화사회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각 부처별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수요에 대한 연구 및 협업의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다문화 전문 인력,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다문화사회통합정책,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 및 2급.

Ⅰ. 머리말

한국 내 외국인 체류자 수는 2016년 말 2백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4] 주민등록 외국인은 제주도 지역만 하더라도

2)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17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7, 790쪽.

3)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9,593명으로 제주도 전체의 3.0%다.[5] 전국의 다문화가정은 27만 8천 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199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체류가 허용된 난민의 숫자도 1,828명에 달한다. 귀환동포와 해외유학생 또한 급증하는 등 이주 유형 및 국적의 다양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은 가속화되고 있다. 2000~2008년 국가별 거주 외국인수를 비교해본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 거주 외국인 수는 5.9% 증가하는 데 그친 것에 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이 기간 평균 19.9%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6]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가, 정부의 유학생, 전문 인력 등의 우수인력 전략유치 및 재외동포 포용정책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7] 하지만 한국인들은 현재 한국이 다문화사회라는 데 74.7%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8]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이주민에게 배타적인 경향은 여전히 심하다. 2015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100점 만점에 53.95점으로[9] 2011년에 비해 다소 상승한 편이지만 일자리나 범죄율 등에 대한 위협인식은 증가하였다. 한국인의 '세계시민으로서 자기인식'은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낮은 편으로[10] 사회적 부작용과 갈등이 예측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민의 역사가 길고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했던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조차도 다문화 관련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로 여겨진다. 다양성과 통일성은 다문화적 국민국가 내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며 상호 공존해야 한다.[11] 다

4) 법무부,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7.
5) 제주특별자치도청, 「2016 주민등록인구통계」, 2017.
6)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7)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17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7, 790쪽.
8) 『동아일보』 2010년 10월 16일자, 「다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위원회, 2010.
9) 여성가족부, 「2015년 다문화수용성지수 결과」, 2016.
10) 여성가족부, 「2015년 다문화수용성지수 결과」, 2016.

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의 방향에서 동화주의나 다문화주의 어느 것도 완벽한 것은 없지만 이민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성공과 실패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도 그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은 2008년 한국사회학회가 법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인 「이민자와 국민 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안」이 정책 제안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다문화사회 교육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필요 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을 제시했다.[12] 2008년 처음 시작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강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이 시작되었다. 학계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자격 인정을 위해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13]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배출된 전문 인력 활용 미흡과 수요에 비해 과잉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14] 교재내용, 이수시간, 수료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였고[15] 다문화 전문인력의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의 중장기적 로드맵 제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16] 현재까지도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제도의 틀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정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 개념 및 역할, 제도 운영, 전문가 활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관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을 제안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11) James A. Banks·모경환·최충옥·김명정·임정수 공역,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2008, 28쪽.

12) 김혜순 외, 「이민자와 국민 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안」, 한국사회학회, 2008.

13) 정지윤, 「다문화 전문가 직무와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14) 민무숙 외,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6-3, 2009.

15) 설동훈·김찬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 2009.

16) 이성순,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과 과제」, 『다문화콘텐츠연구』 10, 2011.

Ⅱ. 다문화 관련 정책

1. 다문화 관련법과 제도

우리나라 다문화 관련 정책의 시초를 살펴보면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12월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통해 2010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었다. 외국인정책 법률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있으며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다문화 관련 정책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7]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사회통합 분야 예산 중 결혼이민자와 자녀 관련 예산은 877.6억원으로 75%에 달했으며, 2012년에는 1,183.9억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18] 다문화가족에 비하여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는데 2016년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설치되어 이민자, 외국인 적응 지원과 민원행정 부처별로 지원되던 외국인 서비스 운영이 통합된 점은 고무적[19]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이민자관련 정책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민자 적용 법령[20]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이민자관련 정책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민자 적용 법령

정부부처	내용	관련 법령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국무총리가 위원장). 가장 많은 예산과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2016년 기준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주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법
행정자치부	58개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주로 외국인 주민들을 지원	
교육부	교육청을 통해 학교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에서 다문화학생들을 지원.	

17) 양미경,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동아시아경제학회지, 2015.
18)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2
19) 법무부,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 정부3.0 협업을 통해 『다문화이주민+센터』설치·운영- 정부3.0보도자료」, 2016. 12. 6.
20) 박복순 외,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 지원. 95개 고용센터와 산업인력공단의 39개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 정책위원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허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300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이민자를 교육.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한편 다문화 전문 인력에 관련된 법령은 대부분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인정기준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

〈표 2〉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법령

법적 근거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 39조 1항, 3항	외국인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민자 대상으로 강의할 한국어 강사와 한국사회이해 강사,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정인력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기본요건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2012.10.15. 신설, 2016.6.15. 개정	다문화사회전문가의 법적 근거. 다문화사회전문가 등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개설 운영.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위탁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가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현재 대학에만 전문인력 양성, 보수 교육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단체로 확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2013.1.16.	시행의 근거-'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 중 한국사회이해교육 강사의 자격은 다문화사회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이거나,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만 가능
법무부훈령 제966호 제정 (법무부훈령 제1023호개정) (2014. 11.27. 제정, 2015.11.23. 일부 개정)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2호 가목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015.6.15개정) 참조.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인정요건 및 이수과목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이란 이민자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한다.[21]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 한 것으로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에서 관할한다.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로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 인력 등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을 포함한다.[2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은 2017년 기준 47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과 253개의 일반운영기관이 선정되었다[23].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기관에서 주관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0~3)단계 교육, 법무부 주관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교육, 그리고 한국사회이해 5단계 기본과정 교육이며 2016년 7월 17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분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5단계 한국사회이해 과목 강사 자격에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기준이 나타나 있다.

〈표 3〉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개요[24]

단계	0~3단계 교육	4단계 교육	5단계 기본과정	5단계 심화과정 교육
교육 내용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 등 영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	한국사회이해 (국적·체류상담포함)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 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정체성, 국가안보, 통일, 외

21)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2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16년 7월 1일부터 국적취득(국적회복, 특별귀화 제외)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가 영주자격(F57)을 신청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23) 법무부 이민통합과, 「201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현황」 (법무부 공고 제2016-254호), 2016. 12. 6.

24)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http://www.socinet.go.kr), 2017. 5. 2 검색.

			소양	교, 헌법 가치 등
이수 시간	기초, 초급, 중급 등 최대 415시간		50시간	20시간
주관	운영기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특징	(1~3) 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강사 자격	1.「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가.「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국어기본법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120시간)이수한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른 다문화사회전문가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또는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법무부장관과 협의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거쳐 개설된 이민·다문화관련 대학(원) 정규과정에서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Ⅲ.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정책 및 교육 현황

1.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우리나라의 다문화 전문인력 관련 정책은 2008년 12월 법무부에서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시작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당시는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분야에서 다문화 전문인력 단기양성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 국가차원에서 통합적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외국인 관련 정책의 주관부처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전국 20개 ABT(Active Brain Tower)대학에 단기양성과정을 위탁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ABT대학 중 일부를 선정하여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양성과정 학위과정을 개설하였다.[25]

초창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계획한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25) 법무부 사회통합과,「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양성과정 개설계획 자료」, 2010.

제도의 목표는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거시적· 종합적 연구, 지역 및 대상에 대한 개별 특성 고려한 다문화정책,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 강사 양성, 각종 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추진,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를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연구소'와 이민정책 전문대학원 개설 등[26]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문화사회이해 프로그램의 강사 양성에 초점이 맞춰 운영되었다.

2.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 현황

1)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1, 2급 구분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다문화사회 전문가 구분)에 명시되어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27]

2급	1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이하 이 표에서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학점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다.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민·다문화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6) 법무부 보도자료, 「다문화 사회통합 ABT대학으로 20개 대학 지정」, 2008. 5. 23.

2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관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개정 2015.6.15).

2)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과목

2008년 당시의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과정은 총 40시간 교육으로 기초소양 12과목(25시간), 전공소양 4과목(15시간)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 총 80시간 교육으로 기초소양 7과목(48시간), 전공소양 14과목(66시간)으로 변경되어 이민·다문화 관련법(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의 이해와 이민자 출신국 별 문화 이해 등이 추가되었고,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안작성법이 추가되었다.[28] 2015년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과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이수 과목[29]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법제 및 정책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교육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다문화(사회)교육론,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다문화일반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석·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실습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50시간 이상)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대학원	3과목 9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이상
대학 전문대학	5과목 15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3과목 9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3) 다문화사회전문가 과목 개설 대학

2012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에서는 성결대(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 석·박사과정), 계명대(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사회학과 석사과정), 동아대(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다문화과정 석사과정), 목원대(산업정보언론대학원 이민다문화학과 석사과정) 등 4개의 대

28)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안내 자료」, 2010.
2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관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개정 2015.6.15.).

학을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대학으로 지정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인정 요건을 위 대학(원)의 정규과정에서 지정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학사, 석사, 박사) 취득 자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공표하였다.[30] 2017년 현재 다문화사회관련 과목 개설 대학은 총38개 대학이며 학부과정은 14개 대학, 대학원 과정은 30개 대학 35개 단과대에 개설되어 있다. 일반대학원에 다문화학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곳은 동국대가 유일하며 특수대학원 중 행정, 정책대학원은 6개 대학,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학과는 16개 대학에서 다문화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는 주로 한국어교육 위주로 총 14개 대학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표 6〉 다문화사회전문가 과목 개설대학 현황[31]

과정	계열	대학명	
학부과정	대학	배재대, 강릉원주대, 동덕여대, 원광디지털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한중대, 부산외대, 총신대, 대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건양사이버대, 화신사이버대, 목원대, 선문대	14
대학원과정	일반대학원	동국대 국제다문화학과, 성결대 행정학과, 목원대 한국어다문화학과,	3
	특수대학원 기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인하대, 중앙대, 우석대, 목원대, 평택대, 조선대, 동아대, 성산효대학, 평택대, 조선대, 동아대, 성산효대학, 전남대, 명지대	16
	교육대학원	인하대, 부산외대, 부산외대, 명지대, 한국외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 공주교대, 서울교대, 건국대, 전주대, 중원대, 경기대, 계명대	16
	대학원 소계		35

4) 이수교육(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 보수교육

다문화사회전문가 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교육(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이 부여되며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4년 10월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기

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인정 대학(원) 및 요건 안내」, 2012.

3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다문화사회 관련과목 개설대학 공지」, 2017. 6. 2 기준

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0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 위탁교육 실시기관[32]을 통해 이수교육을 시작하였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이 총괄하고 수도권은 한국이민재단, 중부권, 남부권 등 세 곳에 전담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수교육 후에는 위탁교육을 맡은 대학의 총장 명의로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증을 발급한다.

〈표 7〉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내용 (2017년 6월 2일 기준)[3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제4조 제2항 관련)

교육과목	교육시간	합계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1시간	총15시간
이민법제론(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10시간	
한국의 이민정책	2시간	
특강	2시간	
비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대상자는 학위과정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박사과정 수료)한 사람임. 특강은 교육대상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수기법, 사례연구, 명사특강 등 교육과목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함		

2016년 이전까지는 다문화사회 관련 학위과정 졸업예정자들의 이수교육(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 기존 다문화사회전문가 역량강화 보수 교육을 통합 시행하여 교육의 목표나 교육 내용 설정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 2016년부터는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인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자 역량강화 보수교육은 이민정책의 이해, 이민관련법, 다문화시대와 사회윤리와 인권, 이슬람사회와 문화, 지역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역할,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과 지위, 한국사회이해 교수기법 및 교수방향, 헌법적 가치 반영을 위한 교수기법 토론, 교육사례 공유, 다문화명사 특강 등을 시행한다.[34]

3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위탁교육 실시기관 공문」, 2016. 6.
3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통합과. 「다문화사회 관련과목 개설대학」, 2016.
34)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www.socinet.go.kr(검색일: 2017년 6월 7일).

IV.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언

1. 다문화사회전문가 개념 및 역할 측면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장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다문화사회전문가의 개념 및 기대 역할의 명확화다.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은 제도를 만들고 양성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1, 2급 구분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다문화사회 전문가 구분)에만 명시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한정된 범위로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 2급의 자격 기준일 뿐 석박사 과정을 포함한 고학력 전문가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는 지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역할이나 전문성 수준의 구분조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09년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시행 당시 다문화 전문 인력의 개념을 '기능적 전문성과 다문화적 역량의 소양을 갖추고 이주자 및 다문화 관련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35] 즉, 다문화관련 기관 종사자나 통역, 한국사회이해나 한국어 강사,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을 전문 인력으로 본 것이다. 초창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계획한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제도의 목표는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거시적· 종합적 연구, 지역 및 대상에 대한 개별 특성 고려한 다문화정책,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 강사 양성, 각종 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추진,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를 위한 '다문화사회통합 연구소'와 이민정책 전문대학원 개설 등[36]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문화사회이해 프로그램의 강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문화사회전

35) 민무숙 외,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다문화전문인력 양성 현황과 정책과제」, 2009연구보고서-6-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36) 법무부 보도자료, 「다문화 사회통합 ABT대학으로 20개 대학 지정」, 2008.

문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협의로 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가 도입된 근본적인 목적을 효율적인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전문가 양성으로 본다면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37]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규정을 분리, 다문화사회 전반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역할과 자격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자기주도적으로 개발,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가진 무의식적인 편견과 사고방식, 확증편향,[38] 전문성의 부식화 등을 경계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이민정책, 다문화교육 그리고 사회통합교육 등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세상의 변화를 읽고 정보를 활용하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39]에 다문화관련 새로운 직업 및 직무, 교육 방법 등을 연구하고 반영하도록 제안하는 것도 다문화사회전문가의 몫이다. 현재 제도에서는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등에도 이러한 내용의 교육은 거의 없으므로 자발적인 학습과 탐구를 통한 역량개발이 필요하다.

2. 제도 운영 측면

어떤 분야이든 전문가 제도를 계획할 때는 국가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 정책 방향이 무엇이고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초기에는 배출된 인력들이 주로 복지 부분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강의 인력이 수요에 비해 과잉 양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2009년 제도 도입 초기에 업무 분야별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요소나 전문성

37)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38) 곽호완·박창호·이태연·김문수·진영선, 『실험심리학용어사전-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시그마프레스, 2008.

39)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과정에서 명확하게 규명 되지 않고 교육이 진행되는 점이 지적되었고.[40] 이수시간과 이민정책, 행정 등 분야로 확대 연계하여 질적 수준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41] 8년이 지난 현재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지위와 역할 또한 변화, 확대되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다문화사회 한국에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가를 파악하여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는 국민이 공감하는 활기찬 이민 사회,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의 실행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의 목표는 교육·상담·행정·연구 각 분야의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문가 양성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별 목표도 밀접히 연계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직무 관련하여 체계적인 직무표준화를 수립하고 양성교육 내용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자신의 전문성과 연계된 부분과 다문화사회전문가로서의 공통 전문성, 강의자로서의 교수역량, 교수법 등을 포함하고 교육내용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격의 인정 기준과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규정(2015.1.1.시행)'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학위과정 이수자 수료증 발급 전 필수교육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제4조제2항)과 역량강화 보수교육은 법제 관련 내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이수 후 법무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나 학위를 수여한 대학 총장 명의가 아닌 이수 교육을 주최한 학교 총장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훈령 제656호

40) 민무숙 외,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다문화전문인력 양성 현황과 정책과제」, 2009 연구보고서-6-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41) 설동훈·김찬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 2009.

제19조. 법무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부여되기로 하였으나 아직 1급 인정을 위한 별도의 이수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의 대상이 되는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현재 이들에게 특화된 이수교육이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배출된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의 직무 역량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보수교육의 내용은 이민법제론(10시간-다문화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법, 난민법, 국적법), 한국의 이민정책(2시간) 특강[42] 등 주로 법제론 위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파악하여 반영하고, 최근 동향 업데이트, 우수 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빈도, 기한 등과 받지 않았을 때의 제재,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등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다문화사회이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은 운영기관을 경유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 강사등록을 해야 강사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기준에 이미 명시된 자격이므로[43] 등록 절차는 불필요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전문가 활용 측면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범위를 교육, 법, 예술, 공무, 사회사업,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하여 전문 영역별 다문화사회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의 개념과 기대 역할이 새롭게 규정된다면 다문화사회전문가 활용범위는 거의 전 분야에 해당한다. 특히 다문화의 포괄적인 개념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를 포함한 이주배경 개인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뿐 아니라 전 국민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이주민 지원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부터 기업의 비즈니스 부문과 KOICA, IOM, UN, UNESCO 등 국제협력까

4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2의 제2항,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기준".

지 다양한 곳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제도상으로 명확한 역할 구분이 없는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전문성에 따른 역할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최근 법무부 귀화 민간면접관 자격에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이 포함된 것처럼[44] 배출된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법무부를 위시하여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의지 또한 중요하다.

그동안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정책은 다문화 담론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정책이 만들어진 측면이 많고, 더욱이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다문화 관련 정책 논의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은 이민 다문화 사회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취합하고 이민행정, 이민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4차산업혁명과 세계화 영향으로 더욱 분주해진 이주의 시대에 우리나라 또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급격하게 진행되는 다문화사회로의 이동에 예측되는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계, 정책입안자의 상호교류를 통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다문화담론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토양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2017년 7월 이민정책 학술지인 이민과 통합(The Journal of the Migration and Integration)을 창간한 것은 환영할 만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민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다문화수용성 현황을 볼 때 일반 내국인과 다문화로 분류되는 다문화사회 일원들의 소통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해결해 줄 전문가의 양성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 관련 법령과 정책,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정책 및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 및 발전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우선 다문화사회전

44) 법무부 보도자료,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2014년4월 훈령(제939호) 개정」, 2014.

문가 개념 및 역할 측면에서는 개념과 역할의 명확화를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45]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규정을 분리, 다문화사회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역할과 자격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학위과정의 내용 개정 및 표준 교재 개발, 1급 자격을 위한 이수교육 개설과 보수교육 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활용 측면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범위를 교육, 법, 예술, 공무, 사회사업,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특히 주관 부서인 법무부를 위시하여 공공기관에서 전문 영역별 다문화사회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은 세계 속의 한국 사회를 발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뿐 아니라 이민 정책 수립, 실행, 다문화수용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다문화사회현상의 변천에 따라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과 역량, 활용도 바뀌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훌륭한 전문가를 배출해내고 전문가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제도의 담당부서인 법무부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과도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기 배출된 다문화전문 인력들의 현황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아쉽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각 부처별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수요에 대한 연구 및 협업의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

45)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연구논저

강정향,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전문직업성과 사회통합지향성에 관한 연구: 인적·사회적·심리적 자본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곽호완·박창호·이태연·김문수·진영선, 『실험심리학용어사전』, 시그마프레스, 2008.

김혜순·김재경·엄한진·최샛별, 「이민자와 국민 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안」, 법무부용역보고서, 2008.

민무숙 외,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다문화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2009 연구보고서-6-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박복순 외,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설동훈· 김찬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 법무부, 2009.

양미경,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동아시아경제학회지, 2015.

이성순.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과 과제」, 『다문화콘텐츠연구』 10, 2011.

정지윤. 「다문화 전문가 직무와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James A. Banks·모경환·최충옥·김명정·임정수 공역,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2008.

2. 언론 및 정부 보도자료

『동아일보』 2010년 10월 16일자,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 위원회, http://news.donga.com/List/Series, 2010(2017년 6월 5일 검색).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안내 자료」, 2010.

_____,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 정부3.0 협업을 통해 『다문화이주민+센터』설치·운영」- 정부3.0 보도자료, 2016. 12. 6.

_____,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6.

_____, 「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www.socinet.go.kr(2017년 6월 7일 검색).

_____, 『이민과 통합』, 창간호 (2017년 7월호), 2017.

법무부보도자료,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2014년 4월 훈령(제

939호) 개정, 2014.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보도자료, 「다문화 사회통합 ABT대학으로 20개 대학 지정」, 200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인정 대학(원) 및 요건 안내」, 2012.
_____,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무부훈령 제966호, 2015.
_____, 「201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현황」, 법무부 공고 제2016-254호, 2016.
_____,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위탁교육 실시가관 공문」, 2016. 6.
_____,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17.
_____, 「다문화사회 관련과목 개설대학」, http://www.socinet.go.kr/soci/comm(2017. 6. 2 검색).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http://www.socinet.go.kr).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2015.
제주특별자치도, 「2016 주민등록인구통계」, 2017, http://www.jeju.go.kr/open/governmen/stats/population.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관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

Abstract

Analysis and Proposals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raining System in Korea

Yang, Mi-Kyung*

In the global environment such as globalization, aging,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ving to a multicultural society is inevitab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multicultural professionals as one of the policies to cope with anticipated conflicts and to respond in advanc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by outlining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professional system based on analysis of past and current multicultural professional training process and proposing development plan.

First of all,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s and roles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he provis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professionals in Article 39 (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ould be revised and expanded. A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oles and qualifications of the first and second grade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Second,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contents of the degree course, the development of standard textbooks, the opening of completion course for the first grade,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maintenance system. Finally, in

* Vice Direct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t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terms of professional utilization, the scope of the role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should be extended to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law, arts, public affairs, social work, and business and th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esponsible department,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place the multicultural professionals in public institutions.

Unfortunately, there is a limit to the statistical data of existing professionals, I hope that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will increase in the role and application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hrough this study an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search and collaborate with multicultural professionals of various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Key Words : multicultural professionals,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raining system, multicultural expert, Multicultural Society Integration Policy, Multicultural Society Professional Certification.

교신 : 양미경 34504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E-mail : listentomiky@gmail.com)

논문투고일: 2017. 09. 15
심사완료일: 2017. 09. 30
게재확정일: 2017. 09. 30